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기관이 현행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시본청"에서도 가능하도록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권자를 "읍·면·동장"에서 "시장"도 가능하도록 함. (조례안 제2조 제5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자료 : 붙임

·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 시달(경북도 지방 13210-222, 96. 2. 26) 공문사본 1부.

· 관련법규(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 발췌 1부.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도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등"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권한의위임)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제18조 및 영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도 가능)

"관 인 생 략"

~~경 상 북 도~~ 영 주 시

우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3-5 / ☎950-2225 / FAX950-2306~7 담당 조광래

선결	국 장		지시		
접	일자 시간	96. 02. 27	결재	과 장	
수	번호	1181		계 장	
처 리 과	총무과		공람		
담 당 자	김성부				

문서번호 ~~지방~~ 총무 13210 -~~222~~ 294

시행일자 '96. 2. ~~26~~ 28. (년)

경 유

수 신 ~~시장 군수~~ 읍면동장

참 조 ~~시정. 총무. 내무. 민원과장 기획. 기획감사. 전산통계 담당관~~

제 목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 시달

시민봉사과장 전산통계 계장 ~~민원행정계장~~

1. ~~내무부 주민~~ 지방 13210-~~122~~ 222('96.2.~~23~~ 26)의 이첩입니다.

2. 오는 3.1부터 시행될 『분실주민등록증 즉시 발급제도』 등 주민등록업무 제도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시행에 따른 담당공무원교육,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 임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 2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영 주 시 장

~~내 무 국 장 전 결~~

2. 市·郡·區에서 住民登錄謄·抄本閱覽 및 交付

○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등·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등·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 민원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등·초본의 교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가. 改善 內容

○ 온-라인등·초본의 교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발급토록 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등법시행령 제45조의3

○ 증명발급명의는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명의로 발급하고 읍·면·등·출장소장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읍·면·등·출장소장명의로 교부토록 함

※ 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명의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개정후에만 가능

○ 시·군·구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하는 경우 관내 읍면등의 자료라 하더라도 수수료의 징수는 주민등록표관리기관이 아닌 온-라인수수료를 적용함

나. 措置 事項

○ 시·군·구의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조속히 개정
- 개정예시 『라.』 참조

○ 조례 개정전까지는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등의 민원직인을 사용하여 해당 읍면동장명의로 교부

· 조례 개정전
  - 증명교부장소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교부
  - 발급자 명의 : 시·군·구청소재지의 읍·면·등장 민원직인 사용

· 조례 개정후
  - 증명교부장소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교부
  - 발급자 명의 : 시장·군수·구청장 민원직인 사용

○ 시군구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위한 사전준비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3.1이전까지 완료

· 통신전산계 : 전산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보급 등
· 주민등록업무부서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필요한 서식 등 준비 및 담당공무원교육 실시
· 민원실 : 전산기기설치장소 확보 및 업무담당직원 배치

○ 시군구에서의 주민등록열람및등·초본의 교부요령은『별지』참조

다. 施行日 : 96년 3월 1일부터 시행

○ 시·군·구 : 온-라인 주민등록열람 및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업무

○ 읍·면·동 : 온-라인 주민등록열람업무
※ 열람요령은 시·군·구와 동일

라. 條例改正事項 例示

□ 조례개정사항 예시 (홍성군)

제2조 (권한의 위임) 홍성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생 략)

5.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읍·면장도 가능)

관 련 법 규

주민등록법

第18條 (閱覽또는謄, 抄本의交付) ①住民登錄票를閱覽하거나그謄本또는抄本의交付를받고자하는者는內務部令으로定하는手數料를添附하여이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請할수있다. 〈改正 91·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閱覽 또는 謄·抄本의 交付申請은 本人 또는 世帶員이 할 수 있으며, 代理申請하는 경우에는 本人 또는 世帶員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1·1·14〉

1. 公務上 필요한 경우
2. 關係法令에 의한 訴訟·非訟事件·競賣目的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閱覽 또는 謄·抄本의 교부는 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閱覽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新設 91·1·14〉

④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日부터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와 관련公簿가 移送되어 오기 전까지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교부한 住民登錄票 謄本 또는 抄本상의 住所는 第17條의7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前居住地로서의 住民登錄地로 본다. 〈新設 93·12·27〉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閱覽 또는 謄·抄本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14〉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등·초본의 교부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해당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예시한다. 〈개정 94·6·30〉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주민등록법시행령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 또는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 법 제18조제2항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5.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그 제출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6.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7.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호적관계서류와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제한 하이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민등록표의 열람은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⑧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⑨등·초본에 기재하는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16]

제45조의3 (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권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6·30]